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37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김주영·강준현·김기표

김 윤•박해철•오세희

위성곤 · 정일영 · 조인철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 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 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사법경 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

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 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 마약류"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법경찰관리)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	
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9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	
품·화장품· <u>의료기기</u> ·위생	의료기기·마약류
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	
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	
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	

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 53.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6. (생략)

8. ~ 50. (생략)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 법」・「화장품법」・「의료 기기법」・「식품・의약품분 약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위생용품 관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 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 사(藥事)에 관한 범죄

10. ~ 53. (현행과 같음)
]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 ~ 6. (현행과 같음) 7
7
<u>「식품·의약품분</u>
<u>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u>
률」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u>법률」</u>
8 ~ 50 (혀해과 간으)